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30
----------	-------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이종배 · 한무경 · 성일종
박덕흠 · 최승재 · 김선교
김형동 · 김승수 · 곽상도
태영호 ·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하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역대 지방선거에서 지역구기초의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따른 당선 통계를 보면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기호 ‘가’를 부여받아 당선된 후보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상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동일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간 유·불리를 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을 참고하

여,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읍·면·동을 단위로 후보자별 게재순위를 순환 배열 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제7항 전단 중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후보자에게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투표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掲載順位 등) ① ~ ⑥ (생 략) 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u>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u>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⑧ ~ ⑩ (생 략)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掲載順位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후보자에게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투표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한다.</u> - -----. ⑧ ~ ⑩ (현행과 같음)